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9. 17.)

2. 개정이유

-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행정의 다변화, 고도화에 따라 확대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(안 제2조제1항)
 - (현행) 5명 이내 → (확대) 8명 이내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정비 등(안 제3조제1항제5호 등)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기타→ 그 밖에, 전일→ 전날, 감안하다→ 고려하다)

4. 참고사항

- 현행조례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7. 21. ~ 8. 11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다변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고,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- 우리 구는 현재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구정현안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, 자문실적은 2023년 99건, 2024년 18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.
-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일반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“5명 이내”에서 “8명 이내”로 확대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업무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의 분쟁 소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